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95
----------	-------

발의연월일 : 2025. 7. 9.

발 의 자 : 정춘생·김준형·이해민
강경숙·김재원·김선민
차규근·신장식·황운하
서왕진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의 활동 중 기관장과의 협의 등의 사항을 근무시간 중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협의회등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간 회의는 분기별 1회, 협의회 대표자와 연합협의회 대표자 간 회의는 매년 2회까지 허용되어 있으므로 협의회등의 회원 수가 수만에 이를 경우 내부 협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현행법 하에서는 협의회등의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무원 노동조합에 적용되고 있는 근무시간면제제도를 공무원 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도 도입하여 협의회등의 설립 취지에 맞는 안정적인 활동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협의회 활동은 기관 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기

관 구성원이란 누구나 제한없이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기관 구성원이 자유롭게 협의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직장협의회 및 연합협의회에 근무시간 면제 제도를 도입하여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수의 손실 없이 협의회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신설).

나.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 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의3제2항 신설).

다. 심의위원회가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라.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동의는 무효로 함(안 제5조의3제4항 신설).

마. 기관장 등이 근무시간 면제를 받은 시간, 사용인원 및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바. 특정 공무원에 대한 협의회 가입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제2항 및 제3항 삭제).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직장협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협의회등 소속 공무원은 기관장 또

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협의회등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및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회등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되 협의회등의 조직형태, 교섭구조·범위 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

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5조의4(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입 범위) ① (생 력)	제3조(가입 범위)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삭 제>
1. 삭제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 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 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의3(근무시간 면제자 등) ①

협의회등 소속 공무원은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이 동의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과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협의회등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근무시간 면제 한도 및 사용인원의 한도(이하 “근무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및 연합협의회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항 및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회등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구성원의 수를 고려하되 협의회등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신 설>

범위 등을 반영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5조의4(근무시간 면제 사용의 정보 공개) 기관장 또는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전년도에 근무시간을 면제받은 시간 및 사용인원,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